

제1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4인 발의) 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4인 발의) 10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3
----------	------

제안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제안자 : 김복동 의원 외 4인

1. 제안경위

- 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 2005.8.4 공포·2006.1.1시행,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06.2.8 공포·시행).
- 나. 2006년 4월 26일 위 같은 법령에 의해 구성된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함.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정함(안 제3조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나. 예산조치 :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 함(총89,420,000원)
- 산출내역: 1,445,000원×11명×6월=5,950,000원(상반기 잔액)
- 다. 기타사항 : 2006년 4월 26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1,445,000원으로 결정함.
- 라. 개정안 및 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종로구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월정수당은 종로구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 기준) ①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 특별시 종로구 여비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부터 지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지 급 액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월 정 수 당	1,445,000원

[별표 3]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4조, 제5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동차 운 입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회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세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외장· 부의장	·2등급이상의 동 급구별이 있는 경 우에는 최상등급 의 철도임	·2등급이상의 동 급구별이 있는 경 우에는 최상등급 의 선임	1등 정액	실비액	가동급 85	가동급 166	가동급 107	140	170	195
					나동급 85	나동급 120	나동급 78			
					다동급 85	다동급 92	다동급 58			
					라동급 85	라동급 79	라동급 49			
의원	·동급구별이 없 는 경우에는 그 승 차에 요하는 실비 액	·동급구별이 없 는 경우에는 그 승 선에 요하는 실비 액	2등 정액		가동급 30	가동급 145	가동급 81	130	155	180
					나동급 30	나동급 96	나동급 59			
					다동급 30	다동급 70	다동급 44			
					라동급 30	라동급 62	라동급 37			

-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교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준비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동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동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나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트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동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파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